산업통상자원부 「제조업」 르네상스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심의위 종료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19.10.1 11:30 예정)
(심의 결과에 따라 자료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.)

배포일시	2019. 10. 1.(화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
담당과장	안세진 과장(044-203-4510) 권기만 팀장(044-203-4520)	담 당 자	홍석민 사무관(044-203-4512)

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 “편리, 안전, 깨끗” 하게!
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

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(홈브루) 1건 → 임시허가
② 증강현실객체인식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 → 실증특례
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3건 → 규제없음 · 정책권고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10.1(화) **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**를 개최하고, ‘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(홈브루)’, ’증강현실・객체인식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’, ’부동산 온・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’, ’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’ 등 **7건의 안건을 심의**하였다.

□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**임시허가 1건, 실증특례 3건, 적극행정**(규제 없음・정책권고 등) **3건** 등 **7건**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, 총 **33건의 융합 신제품・서비스**에 대한 **규제 애로**를 **해소**하였다.

*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: 실증특례 16건, 임시허가 5건, 적극행정 12건

<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>

ㅇ **일시 및 장소** : ’19.10.1(화) 10:00,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
ㅇ **참석자** :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
ㅇ **안 건** : 임시허가 1건, 실증특례 3건, 적극행정 3건 등 총 7건
- (임시허가) 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('엘지 홈브루')
- (실증특례) ② 증강현실.객체인식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
③ 부동산 온.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
④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
- (적극행정) 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
⑥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
⑦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

【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】

□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**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**했으며,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[안건1]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(엘지 홈브루) : 임시허가

□ (**신청 내용**) 엘지전자㈜는 **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'엘지 홈브루'**의 시음행사 관련 **임시허가**를 **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**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**('19.7월 출시)인 **'엘지 홈브루'**의 **원활한 홍보·판촉**를 위해 대리점·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**시음행사를 진행**하고자 한다.

*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~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

< '엘지 홈브루' 맥주 제조 프로세스 >



○ '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*, 맥주 대중화, '홈(Home)술' 트렌드에 따라 **수제맥주**와 **홈브루잉**(homebrewing)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, 해당제품과 같은 新유형의 맥주 제조기 등장으로 **맥주 시장**이 **보다 활성화**되고 있는 추세이다.

* 소규모 맥주제조자 주세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,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등

□ (**현행 규제**)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,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「**주세법**」 및 **위임 고시** 등에 따라 '**주류 제조면허**' 및 '**시음행사 사전승인**'이 필요하다.

○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하며,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, 신청 기업(전자제품 제조)의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, **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**하다.

* 주세법 제6조 등 :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 취득 필요
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등 :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주류 제공 불가

○ 이러한 사유로,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(7.16일)하는 등 **제품 홍보·판매에 애로**가 있는 상황이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**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** 등을 조건*으로 「주세법」상 **'시험제조면허'**에 대한 **'임시허가'**를 **승인**하였다.

* 국세청과 면허·사전승인 방식, 주세납부, 수량.알코올 검정 방법, 공간적 범위 한정 등 주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등 사전협의 전제

○ 이로써,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**주류 제조 면허**를 **취득**한 후, **시음행사 사전 승인**을 받아 **전국 약 1,300***여 곳에서 **시음행사를 진행**할 계획이다.

* 엘지전자 베스트샵, 하이프라자, 홈플러스, 이마트 등 양판점 등

□ (**기대 효과**) 시음행사를 통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**선택권이 제고**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**수입맥주**를 **일부 대체**하는 **효과도 기대**된다.

○ 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, **맥주 산업 전반**의 **활성화와 경쟁력**도 **강화**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[안건2] 증강현실객체인식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충청에너지서비스㈜는 **'증강현실·인공지능 기술 접목 드론**을 활용한 **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'**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
* 객체인식(AI) : 다양한 굴삭기(색상.크기 등)의 움직임 및 문제 상황 실시간 감지
증강현실(AR) : GIS와 연계하여 땅 밑에 묻혀있는 가스배관 위치를 오버레이

○ 본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**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 구역**에서 이루어지며, 특히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.

○ **도시가스 안전관리**에 **가장 큰 위험 요인**인 **미신고 굴착공사**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,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*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**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**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.

* 운전.관제 동시 수행 곤란, 차량진입 불가 구역 점검 제약, 장시간 소요 및 일회성 점검 등 관리 방식상 보완점 존재

< 증강현실.객체인식 활용 드론의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>



○ **객체인식·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드론**을 **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**한 것은 **국내 최초 사례**로서, 향후 다른 안전관리 분야(지반침하, 도로 파손, 화재점검 등)로의 확대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□ (**현행 규제**) 도시가스사업법, 개인정보보호법, 위치정보보호법,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'**복합 규제**'가 확인되었다.

○ 먼저, 현행「**도시가스사업법**」등 안전관리 법령에 **드론 관련 규정**이 **부재**하며,「**개인정보보호법**」상 개인에 대해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**개인정보**의 **수집·이용** 등이 **제한**된다.

○ 또한,「**위치정보보호법**」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**개인위치정보**의 **수집·이용** 등이 제한되며,「**항공안전법**」및「**보안업무규정**」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**드론 비행** 시 **비행 승인** 및 **촬영 허가**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.

*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,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요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증강현실·객체인식** 등 **기술 완성도 제고** 및 **서비스 효용성 검증**을 위해 **조건부*** **실증특례 승인**을 의결하였다.

* ①제3자(한국가스안전공사) 참여(도시가스사업법), ②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(개인정보보호법), ③특정기간·특정대상 한정(위치정보보호법), ④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, 연락망 유지,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(항공안전법 등)

○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, **드론 비행 승인** 및 **촬영 허가기간**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**연장 허용**하고,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**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**하였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**도시가스관리**의 **안전성**이 **확대**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최근 미신고·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, **현행 차량 중심 순회점검**의 **사각지대 해소**에 기여할 것이다.

○ 또한,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, **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**와 전반적인 **산업 안전관리 역량**의 **개선**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3]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광고물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㈜**선방**은 '**부동산 온·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**'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**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**(디지털광고물)로 **대체**하여,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**온라인 매물**이 **일정 간격**으로 **변경되는**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.

<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광고물 예시 >

<기 존> <개 선>



○ 해당 실증은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**서울시와 경기도 지역**에서 진행되며, 이를 통해 **부동산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** 동시에 **도시 미관도 개선**하고자 한다.

□ (**현행 규제**)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·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광고물은 **상업지역에는 '허가'**를 **주거지역에서는 '설치 금지'**되어 있다.

○ 이는 **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**를 제한하고, **빛공해** 등에 의한 **주거환경 침해**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** 등을 **실증**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, 행안부, 서울시,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*하에 **해당 서비스의 특례를 허용**하였다.

* ① (광고방식) 타사광고 및 동영상 광고 금지, 건물 1층에 한정 등
② (빛공해 방지) 밝기: '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', 주거지역: 새벽시간전원 차단(24시~06시)
③ (도시미관)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(천, 종이, 비닐) 제거에 적극 협조
④ (설치개수)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

□ (**기대 효과**) 최근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**디지털광고물의 효과**와 **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**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(Track Record)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실증 결과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**창문 이용 광고물**을 **정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법규정 개정**(행안부)에 활용될 예정이다.

○ 디지털광고물을 적정 수준으로 정비하여 **업주는 광고효과를 높이고, 광고물 난립 해소**로 **도시 미관이 개선**되며, **시민들은** 원하는 광고를 **편리하게 제공**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4]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**한국도로공사**와 **4개 고속도로 운영사***는 '고속도로 휴게소 **식당의 주방 공유**로 **청년창업** 등 지원'을 위한 **실증특례**를 신청하였다.

* ㈜대주산업, ㈜영풍, ㈜케이알(KR)산업, ㈜대보유통

○ 해당 주방공유 사업은 대부분의 **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**(20시) **이후**에 커피·간식류 등의 **서비스가 제한**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,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**시간을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**으로 이루어진다.

* 매장 운영시간 : 일반사업자(08시~20시), 추가 사업자(20시~24시)

<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요 >



○ 지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('19.4월)에서 **이미 승인한 공유주방 2개소**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**가시적 성과를 시현**하고 있는 가운데,

○ **4개소 추가 실증**을 통해 **위생,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**하고, **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**(식약처) **방안 수립**에 반영할 예정이다.

* (기존) 서울만남, 안성(부산) → (추가) 죽전, 안성(서울), 화성(시흥), 하남드림

□ (**현행 규제**) 현행 **식품위생법**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, 별도로 구획·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, **1개 주방에 2개 이상**의 **사업자**가 **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**하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위생 안전성 확보***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,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고자 하는 **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**에 대한 **실증특례를 승인**하였다.

*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·운영, 주간·야간 영업자간 일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, 식약처 제공 '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' 준수

□ (**기대 효과**) 공유주방(Shared Kitchen)은 미국,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**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유도**하고 **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**할 전망이다.

○ 또한, 해당 주방을 청년·저소득층·장애인·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, **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, 청년·취약계층**의 **창업·일자리 창출**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5]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: 규제없음 [적극 법령해석]

□ (**신청 내용**) ㈜**픽셀디스플레이**는 '**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**'에 **대한 실증특례를 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일반 사용자가 **스마트폰 앱 사진촬영**을 통해 **안구굴절 검사**를 진행하고 근시·난시 등 **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**를 **제공**하고자 한다.

* 정식 의료기기 인증·허가,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보유

○ 어린이의 경우 근시·난시 등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발견 발견하기 어렵고, 검사 진행시 협조도 어려웠으나, 신청제품은 고가(高價)의 검안기기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**기초적인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**을 **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**이 있다.

<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화면(예시) >



□ (**현행 규제**)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「**의료법**」상 **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**하여,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녀의 **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**이었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**의료행위에 해당**되나,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**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 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'규제가 없어 가능하다'는 결론**을 내렸다.

○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으므로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를 즉시 시장 출시가능하나, **진단·처방 행위는 불가**하고 **오차 가능성** 등에 대해서도 **사전에 충분히 고지**토록 하였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값비싼 검안기기나 추가장치 부착 필요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**간편하게 기초적인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**할 수 있어 **국민들의 안(眼)질환 예방** 등에 **기여**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**조기 발견이 어려운 유아**의 **시력 저하**에 대한 **부모님들의 관심도**를 **높이고** 안구굴절검사 및 안경처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환자군의 **관련 서비스 수요 활성화**도 기대된다.

[안건6]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등 : 규제없음 (대안제시)

□ (**신청 내용**) ㈜**리사이클빈**은 **커피찌꺼기를 활용**한 **버섯배지 생산** 및 **버섯재배·판매**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**실증특례**를 **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*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, 농작물 비료 등으로 **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**을 추진코자 한다.

*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

< 커피찌꺼기.버섯배지.버섯재배 등 >


< 커피찌꺼기 >


< 버섯배지 >


< 버섯재배 >

□ (**현행 규제**) 현행 **커피찌꺼기**는 「폐기물관리법」상 **생활폐기물** 또는 **사업장폐기물**로 분류되고 있어,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**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**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.

*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'사업장폐기물 배출자' 등이 신청인 기준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**자원순환기본법**에 따른 ①**순환자원 인정** 방식 외에 **폐기물관리법**에 따른 ②**폐기물처리업 등록**, ③**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**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,

○ 순환자원 인정 절차보다 **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**한 **'폐기물 처리 신고자' 방안**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키를 권고하고, 이를 **신청기업에서 수용**하였다.

○ 추후 **폐기물처리 신고 절차**가 **원활히 진행**될 수 있도록 **한국환경공단**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현재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되어 재활용되지 않는 **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**하는 것은 **국내 최초 사례**로, 커피찌꺼기에 대한 친환경 처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○ 커피찌꺼기 처분 시 발생하는 **탄소량 감소, 비용 절감**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**친환경 사업의 대표적 사례**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7]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: 정책권고

□ (**신청 내용**) ㈜**풍년농장**은 '**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**' **증축**에 대해 **임시허가**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해당 농장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**동물복지 인증**을 획득한 곳으로, **시장 수요가 높아**짐에 따라 **기존 축사를 증축**하고자 **계획**하고 있다.



* 기존 축사는 관련 규제 제정전 건축허가 旣획득

□ (**현행 규제**) 「가축분뇨법」(환경부)은 **각 지자체**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**가축사육**의 **범위**를 **제한**할 수 있도록 **규정**하고 있으며, 신청기업이 소재한 **남원시**는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**1,000m 이내**에서의 **닭 사육**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신청인 신청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**, 가축사육 제한 관련 **대법원 판결***('19.1) 등을 고려하여 **임시허가**의 **대상**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.

*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가능

○ 다만, **환경부·농림부**가 **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**을 **설치·관리**하는 경우 **가축사육 제한거리**를 **완화**할 수 있다고 권고('15.3)한 바 있으므로,

○ **신기술·설비**를 도입하여 **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**에 대해 현행 1,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**예외 적용**이 **가능**토록 **남원시에서 조례개정**을 **추진**할 것을 **정책 권고**하였고, **남원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**하였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이번 권고가 **지자체**의 가축사육 제한범위 설정시 신기술적용 시설·설비를 고려토록 **적극행정**을 **유도**하고,

○ **축산농가**의 **자발적인 신기술·설비**를 **설치를 장려**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거주 **주민**의 **환경권 제고**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향후 계획 】

□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"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**식품・안전・광고・환경** 등 **내 삶의 주요 영역**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**규제를 해소**하여, **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**"고 평가하며,

○ "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, **국민 체감도**와 **산업적 파급력**이 큰 **'규제 샌드박스' 사례 창출**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다."고 밝혔다.

□ 또한, "기 승인과제 중 **8건***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조금씩 **가시적인 성과**가 나타나고 있다"고 하며,

* 도심 수소충전소,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, 전력데이터 공유센터,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,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등

○ “일부 지연 과제*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출시를 밀착지원하고 있으며, 오늘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**사후지원****에도 **만전을 기할 것이다**”고 언급하였다.

*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공용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심의 통과

**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, 서면점검(매월 최소 1회), 현장점검(필요시), 사후관리 설명회, 기업별 사후관리 1:1 상담 등을 통해 상시.밀착 모니터링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